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88

발의연월일: 2021. 4. 23.

발 의 자:김민철·김철민·김홍걸

민형배 · 민홍철 · 서영교

양향자 • 어기구 • 오영화

이용호 · 임오경 · 장철민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어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발의됨.

이에 맞추어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 조성과 그 용도를 규정한 동 법률의 적용 기한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제16856호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96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법률 제1685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부칙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	제2조(적용기한)
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	
정규정은 이법 시행일부터 <u>2022</u>	<u>2027</u>
<u>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	<u>년 12월 31일까지</u>
다.	.